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0.

발 의 자 : 박용갑 · 문진석 · 정준호
염태영 · 황정아 · 조계원
윤준병 · 박희승 · 이병진
소병훈 · 조인철 · 어기구
조승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료는 물론, 수급자에게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통한 보수하는 범위가 도배나 장판, 창호 교체, 지붕, 욕실 및 주방 개량을 비롯해 일부 단열과 난방공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, 취약계층의 냉·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효율 공사비율은 14.9%, 냉방장치 공사비율은 2%에 불과함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노후도는 물론, 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·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·개량·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을 정하고,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, 제11조제1항제2호 등).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수선유지비”를 “수선유지비(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·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·개량·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주택의 노후도”를 “주택의 노후도 및 에너지 이용 효율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단열”을 “단열, 에너지 이용 효율 및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·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 여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해당 주택의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지출, 냉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소비 행태 등에 관한 사항

제11조제2항제2호 중 “제1호”를 “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2. 주택의 구조 안전성, 방수, 단열, 주택노후도,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·난방 장치

등 건축설비의 설치 등 수선유지의 결과. 다만,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가 장애인·고령자이거나,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,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및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주거급여”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, <u>수선유지비</u> ,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수선유지비 (「 <u>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</u> 」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·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·개량·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----- -----.
2. ~ 8. (생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수선유지비의 지급) ① (생략)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, 소득인정액, 수선유지비 소요액, <u>주택의 노후도</u>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	제8조(수선유지비의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주택의 노후도 및 <u>에너지 이용 효율</u> ----- -----.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신청조사) ① (생략)

1. ~ 2. (생략)

② (생략)

1.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, 방수, 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

<신설>

2. (생략)

제11조(확인조사) ① (생략)

1. (생략)

2.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
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7조(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) ① ~ ② (생략)

제10조(신청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-----
-----단열, 에너지 이용 효율 및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·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 여부-----

2. 해당 주택의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지출, 냉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소비 행태 등에 관한 사항

3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확인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제1호 및 제2호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④ ~ ⑤ (생략)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